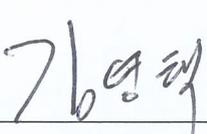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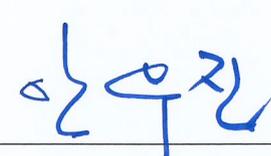




일시	2022.08.29.(월) 15:00
장소	제주1별관 회의실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회의록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윤은경	김영택	안우진
		

Jeju 제 주 시

회의명칭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전체회의
회의주관부서	기획예산과
회의개최일시	2022년 08월 29일 15:00~16:00
회의장소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
회의 공개여부	공개
참석자명단	<p>위원 41명 중 36명 참석</p> <p>○ 위촉직 : 고*연, 김*범, 김*근, 현*화, 김*희, 김*범, 강*조, 양*보, 오*수, 고*범, 김*원, 이*성, 김*남, 김*혁, 윤*팔, 문*복, 김*성, 이*화, 윤*보, 김*임, 원*현, 홍*철, 문*희, 고*철, 고*룡, 김*룡, 김*택, 송*주</p> <p>○ 당연직 : 안*진, 홍*균, 강*우, 고*희, 고*대</p>
회의 진행순서	<p>1. 개회</p> <p>2. 국민의례</p> <p>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p> <p>4. 폐회</p>
상정안건	<p>1.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부위원장 선출</p> <p>2.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2023년도 심사대상 사업 안내.</p>
<b>위원별 발언요지</b>	
※ 별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p>○ 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기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부위원장 김영택 위원 선출</li> <li>-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사업 도 제출 사업 의결</li> <li>-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사업 도 제출사업 의결</li> <li>-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사업 제출사업 심의평가표에 따른 선정방법 의결</li> </ul>
비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참고사항 기재

# 회의록

---

## ■ 간사(기획예산과장)

- 회의 진행순서 소개
- 위원 소개
- 성원보고
  - 전체 위원 41명 중 참석 36명, 불참자 5명

## ■ 위원장(부시장)

- 개회선언
- 인사말씀

### 【회의진행】

##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이후 1호 안건으로 저희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부위원장 선출건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상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부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부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있어, 선출방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부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의원이나 의원님 중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김\*범위원

- 아까 마지막으로 소개되신 이호동 김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 위원장

- ○○읍 김\*범 위원님께서 이호동의 김영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이호동에 김영택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출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택 위원님은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선출되신 김영택 부위원장님께서서는 앞쪽으로 좌석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단한 인사말씀도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김영택 위원(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이호동 지역회의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전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위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뭐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읍면동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모자란 점 지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다음은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운영계획 및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및 2023년도 심사대상 사업 설명<회의자료>

■ 위원장

- 회의자료 4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시면 지역사업하고 참여사업이 있습니다. 제 중 지역사업은 읍면동의 실링 범위가 66억인데 패널티 2억을 제하여 64억 편성을 해서 제출할 계획이고요
- 참여사업이 지역사업 규모의 130%내 선정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참여사업 85억8천만원 중에서 시정참여사업 13억5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지역참여사업은 여기 위원님께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해 결정을 해야되겠습니다.
- 안건은 첫 번째로 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이와 같이 사업공모 및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제출된 302건, 207억9천8백만원의 사업에 대해 조정협의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읍면동 지역사업 경우 지역회의 및 관련부서 검토 과정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심의 자료의 사업설명서 및 회의자료 6페이지의 ‘읍면동 지역사업 총괄현황’과 같이 134건, 67억1천8백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배분액 범위 내 편성 및 사업유형 변경 등 지역회의와 협의하여 130건, 63억8천1백만원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 지역사업의 경우 64억 한도액 내 검토 완료되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지역사업은 검토 조정한 대로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합니다.

- 회의자료 6쪽에 보시면 134건에 67억1천8백만원이 제출됐고요 4건의 3억3천7백만원이 감조정 됐습니다.
- 검토결과 이제 130건 63억8천1백만원으로 도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읍지역 4억 동지역 2억으로 편성되는 예산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부분 혹시 더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 현\*화 위원

- 안건 통과하기 전에 자료 6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거기에서 패널티 조정 대상 사업 중에 미집행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우도면이라든가 삼양동, 노형동 등 작년에 읍면동 지역회의나 실과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집행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님

-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읍면동 담당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노형동 주민자치팀장

- 안녕하십니까 노형동 주민자치팀장입니다.
- 저희 노형동의 관내 페트병 및 이 설치 사업을 추진을 못한 사유로는 사유가 도내 업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폐업이 된 상태였고 타 지역에 업체 제 프로그램 설치 시 as 사후 관리가 어려워서 그리고 고장이 자주 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 현\*화 위원

- 검토할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냐, 검토 시에 사후관리 문제 등도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다른 읍면동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 노형동 주민자치팀장

-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동 원\*현 위원

- 패널티에 대해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못해서 못한게 아니라 업체 측에서 시행을 못한 부분이다.
- 동에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아닌데 이중 패널티를 받은 것 같은 사항이다, 동에서

잘못하지 않은 경우는 패널티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

■ 위원장

-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화 위원께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셨고, ○○동 원\*현 위원님께서는 사업시행업체의 잘못으로 연대해서 패널티 대상이 되냐는 의견이셨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이월이 불가능한 사업이어서 또한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는데, 어렵게 주민참여예산 지역조정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도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면 기준 변경을 하겠지만 기존 기준으로 예산 통과된 사항들은 100% 집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동 고\*룡 위원

-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업체가 이제 문을 닫음으로써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패널티를 적용을 받았다. 그리고 지역사업 예산이 읍면은 4억이고 동지역은 2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 또 지금 저희동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6만을 육박하고 있고 땅도 굉장히 큰 면적을 갖고 있는데 2억을 가지고는 모자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교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구가 많은 지역은 예산을 많이 준다든가 주민참여예산 올리려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 의견 감사하고 그 부분에 있어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읍면지역에 4억, 동지역 2억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지역에서도 2억이 넘는 좋은 사업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격차의 감소나 해소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조정협의회에 의견으로 도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동 문\*희 위원

- 아까 00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공감하면서 ○○동의 경우도 사업을 결정하는데 2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거나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 위원님 말씀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읍면동 실링한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다.

■ ○○동 김\*임 위원

- 저는 ○○동 김\*민 위원입니다. 저는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궁금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 여기 사업 중 사업 청년사업 광역사업 이렇게 있는데 청년 사업이 신설되어 있는데 청년 사업이라고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 청년 사업이라는 것이 청년회가 추진하는게 청년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반사업할 때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모니터링 제도가 다시 신설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모니터링 주체와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기획예산과장

- 청년 사업은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 수혜자가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 ○○동 김\*임 위원

-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만19세부터 39세인 사람들 대상인 사업인건니까?

■ 기획예산과장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한은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사업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동 김\*임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은 아무나 제한할 수 있는데 19세에서 39세 그 사이에 혜택을 보는 사업이면, 복지 관련 사업도 관계없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 복지 관련은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으로 해당됩니다.
- 그리고 모니터의 운영은 우리 도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에서 분기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읍 김\*희 위원

- 저 ○○읍의 김\*희 위원입니다. 읍면동 배분액에 대해 말이 나왔는데 읍면지역의 경우 면적이 넓어 읍면의 예산을 줄여 동지역에 더 배분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증액시켜 배분액 조정이 필요하다

■ 위원장

-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액 규모자체 한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 읍면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 고\*룡 위원

- 읍면은 4억이고 동은 2억으로 지역사업 배분액이 나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뉘지는 건지 알고 싶고, 읍면지역의 4억을 잘라서 동지역에 주어야한다는 의미로 얘기한건 아닙니다.
- 배분근거를 알아야 지역위원들에게 설명이 가능이 할것이라 이런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드린다.

■ 위원장

- 지역배분액의 경우 사업유형에 의해 편성되는 부분이라 설정 기준과 원인에 대해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해서 위원님께 9월 회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 고\*철 위원

- 여러 동에서 업체의 잘못으로 페널티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업체의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각 읍면동에서 하는겁니까

■ 위원장

- 업체선정은 발주부서인 읍면동에서 하는거고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단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 ○○동 고\*철 위원

- 사업추진상 이익이 없어서 추진이 안된거 같은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동 김\*남 위원

- 위원장님 이거 지금 동의 받으려고 지금 안건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 그렇습니다.

■ ○○동 김\*남 위원

- 예산부분은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 업체 관련된 의견은 이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2호 안건인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검토 조정한 대로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사회은 검토안대로 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시정참여사업 7건 1,350백만원 제출 사항 설명
- 의결사항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정참여사업은 소관부서에서 검토 조정한 대로 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제주시의 참여사업 제출한도액 85억 8천만원 중 시정참여사업비 13억5천만원을 제

외하여, 72억 3천만원 한도액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회의자료 11페이지의 '읍면동 지역참여사업 총괄현황'을 보시면, 139건, 108억4천7백만원이 제출되었으나, 사업유형 변경 등으로 인해 142건, 109억2천8백만원이 심의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중 회의자료 12페이지의, 편성불가사업에 해당하는 4건, 4억8천8백만원에 대하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도 제출사업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도 위원회 참여사업 선정기준에 부합성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평가 점수순으로 한도액 내에서 제출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평가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면 오\*수 위원

- 지금 지역참여사업 중 00면의 편성 불가사업과 문제 발생 우려 사업이 있습니다. 편성불가 사업은 사유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마는 대왕산 공동묘지 지원 사업이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애초에 저희들도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70년도 중반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공동 묘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방치되어져 묘지를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2019년도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어 개발하자는 취지도 아니고 수목을 벌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인데 절대보전지역이어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탁상행정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네 이 부분은 현실하고 제도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인 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혹시 이부분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면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할 부분 있습니까.

■ ○○면 오\*수 위원

- 환경관리과에 사업을 검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인허가 과정이 1년이 넘습니다.
- 지역 주민들 내지는 위원장 되는 지역 의원들이 이 사업의 계획을 다 알고있는게

아니다, 행정의 지도 편달이 있어야한다.

- 그리고 아까 다른 동의 위원장님께서 지역 인구아 지역 면적에 비해 예산이 적다 하셨는데 26개 읍면동에서 인구비례로 하면 ○○면은 예산은 없다
- 이제 민선 8기가 되면서 도 예산 예산의 1% 정도를 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만들어서 지역이 얼마 내리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집행 과정을 어떻게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세분화를 해가지고 지역에 공론화를 시켜야 되지 예산만 많이 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중요한 얘기고요 이분도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이 아마 증가될 예정이고요
- 전면적으로 배분기준라든가 편성,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전달된 내용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 ○○동 홍\*철 위원

- 다름이 아니고요 이럴 기회가 없으면 기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작년에 같은 경우 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심의를 통과하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참여사업은 각 동의라든지 읍면에서 여러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다. 또 지역참여사업 온라인투표 방식이 제주시, 서귀포시 할당이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 온라인 투표방식은 아는 사람들끼리 부탁해서 투표를 해버리고 젊은사람들이 아니면 투표하기도 힘들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과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 작년까지는 온라인투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중에 한 곳에 다 투표를 하지 못하고 최소한으로 투표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제주시민이라도 반드시 서귀포를 3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개선이 되어서 분과별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 여기에 계신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읍면동의 위원장이시니 온라인 투표를 할 때 이제는 이제 분과별로 투표하는 사항을 홍보해주시면 제주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읍 김\*범 위원

○ 여기 올라온 사업들은 읍면동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위원장(부시장)

○ 그렇습니다.

■ ○○읍 김\*범 위원

○ 검토된 사항을 여기서 자꾸 얘기해서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는데 조속히 심의가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참여사업 중 우리가 142건 중 109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 이제 올릴 수는 범위가 72억 원이다, 72억 원까지 사업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각 사업별로 점수를 부여해 평가 제출해 주시면 이걸 통해 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 그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발굴한 후 약간 이게 관련법이나 사전절차에 해당 되는지, 행위가 가능한지 이런 저런 부분들을 복잡할 부분이 있습니다.

○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사업 발굴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읍면동 공무원과 관련 부서에서 서로 컨설팅 형태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제출된 사업이 불가사업이 됐든 편성가능 사업이 됐든 내부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선정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사평가표 평가에 의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오늘 불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심사 평가를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출 사항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동의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차회의는 9월 6일 예정으로 회의 종료 후에 심의평가표를 배부 받으시고 심의평가표를 9월 1일까지 작성하여 기한 내 제 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한 심의평가표는 가까운 읍면동 또는 시청 주민참여예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건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이\*성 위원

- 지금까지 얘기하신 의원님들 얘기에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 지금 보면 어떤 소통이나 논의 과정에서 사업상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참여예산에서 신청들어온 사업들을 우리가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어쨌든 사업 관리도 중요하지만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서 신청, 선정된 사항이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동 원\*현 위원

- 기존에 하시던 위원님들도 많고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그런데 저는 일을 잘못해서 우리가 2억까지 1억 8천 이렇게 패널티까지 받은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패널티 받은 사항이 유인물로 공개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 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개가 돼야될 부분이고, 또 패널티 사항이라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은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남아서 패널티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앞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사업도 선정하고 또 연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패널티 받은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동 이\*성 위원

- 참여예산이라는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년 동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만 회의하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패널티 사항이나 사업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의제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한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이상 회의를 마치자는 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